



2017년 2월 28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원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대상이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면적 430㎡이상 ~ 1,000㎡미만인 학원은 새롭게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면적1,000㎡이상인 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의무기한은 2015.4.28. 로 기 완료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가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약 70,000개 이상의 건축물이 석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유해요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원의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며 **법정기한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연면적 430㎡이상
소유주께서는
'18년 12월 31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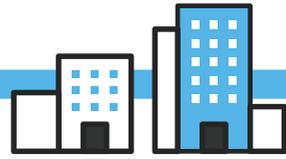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건축물석면관리제도 안내



01 건축물석면관리제도가 무엇인가요?

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 이전까지 사용된 석면은 특히 건축자재 원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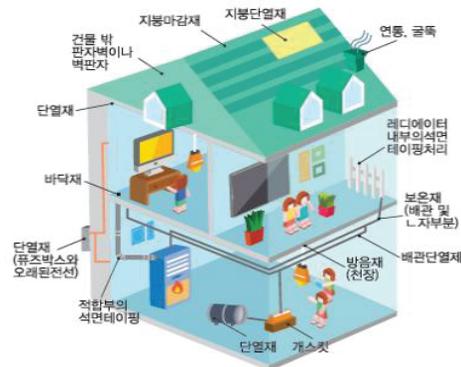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02 학원에서 석면함유건축자재가 발견되는 곳은 주로 어디인가요?

건축물에 쓰인 석면함유건축자재



과거에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다양한 재료를 만드는데 석면이 사용되었으며 가장 많이 확인되는 재료로는 텍스(천장재), 밤라이트 (벽 또는 칸막이) 등이 있습니다.

03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는 학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학원이외에도 공공건축물, 학교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정규모의 시설 등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대상 건축물) 별표 1의2 참조

04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중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나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05 건축물석면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06 석면조사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석면관리종합정보망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석면조사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
→ 고객마당 → 자료실 → 22.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목록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07 건축물석면조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규로 석면조사대상이 되는 연면적 430㎡이상(~1,000㎡미만)인 학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08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 (<http://asbestos.me.go.kr>)에 결과서류를 제출하여 '석면조사식별번호'를 확인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09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할 때는 1)석면조사 결과2)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일 경우) 3)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관련서류 (석면건축물일 경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10 석면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11 조사결과 석면건축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소유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필요 서류(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분증사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명서 사본)를 첨부하여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하여야 합니다.

※ 변경 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1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6시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합니다. (2018년부터 적용)

1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는 대상이 또 있나요?

아래의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인 :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14 건축물석면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소유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 건축물석면조사를 기한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천만원 이하의과태료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적정 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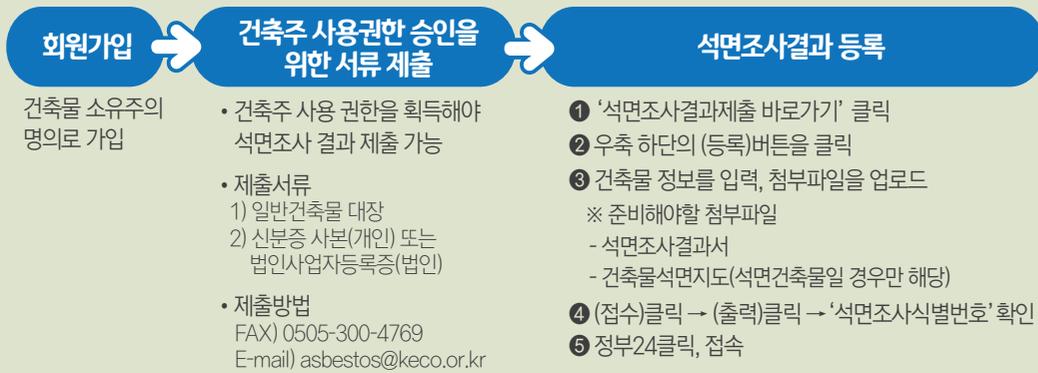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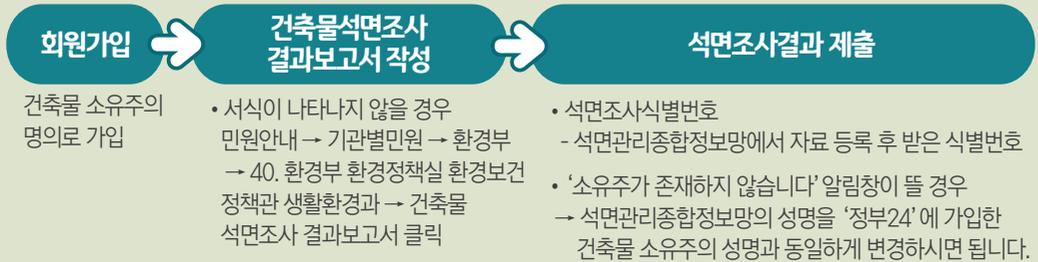
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조사결과서류 등록후 '정부24'(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오프라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에 제출

1단계)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석면조사결과서류 등록



2단계) 민원접수-정부24(www.gov.kr)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록 (석면건축물일 경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

? 건축물석면관리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외 문의사항은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모든 지하역사(출입동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하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
 - 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2. 1동의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